

- 두 번째 의미의 연세액을 “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”으로 의미 명확화

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-|
| <p>「지방세법」</p> <p>제12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③ 납세의무자가 <u>연세액</u>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연세액</u>(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.</p> | <p>「지방세법」</p> <p>제128조(납기와 징수방법) ③ 납세의무자가 <u>연세액</u>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</u>(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)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.</p> |

-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연납 공제액 계산 관련 조문과 계산식 정비
 -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,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 부과 가능. 이 때, 제2기분 세액의 10% 범위에서 공제함에도 불구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28조 제4항의 조문과 같은 조항의 계산식이 상이함
 - 계산식의 공제 기준을 ‘제2기분 세액’으로 정비

※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6월 연납 계산식의 공제 기준도 ‘제2기분 세액’으로 일치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경우부터 적용

■ 지방세법 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6조 (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)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